

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11.
제출자 : 달성군수

□ 제안이유

- 현실성이 없고, 공익개념의 포괄성으로 재량권의 남용 소지가 있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확정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.

□ 근거법령

-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(규제법정주의)
-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(규제의 원칙)

□ 주요골자

-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시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을시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삭제 (안 제7조)

□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을 군에 반환하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	<p>제7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삭제></p>